

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더불어민주당 은평 제2선거구 출신 이병도 의원입니다.
- 「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110호
「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- 노인과 장년층은 기준 연령과 그에 따른 지원사업 등이 상이하므로,
이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「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자문·심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

있습니다.

이에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자문·심의 사항 중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아무쪼록,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